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시행 2020.10.08]
(제정) 2020.10.08 조례 제260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20-1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2장 공약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법적 제한요인, 경제성)
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3. 투자 소요액 및 자원 조달 가능성 등

③ 시행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액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 여부 검토 결과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정리된 시행계획을 군수 결재 후 확정하고,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는 시행계획을 확정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행실적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군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등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2.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평가단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심의

2. 공약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제11조(평가단 회의 운영)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평가·심의할 수 있다.

④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평가단 회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함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